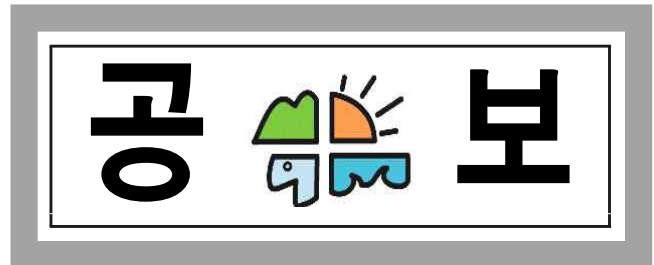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70호 2015년 12월 30일(수)

조 례

-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 속초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38

규 칙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9

훈 령

- 속초시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56

고 시

-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73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2호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1,760,000원”을 “월 1,826,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원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2018년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8% 범위내에서 인상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3호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를 “속초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3조 중 “속초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속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휴일 당직근무 및 당직인원 부족으로 인한 잦은 당직근무 등 열악한 여건속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당직비상한관련 근거조항 신설로 수도권은 이미 당직비를 인상 하였으며 도내 타시·군도 추진중에 있음으로 형평성을 고려 당직비 인상을 추진코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4호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치분합”을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을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로, “이를 위임한 때”를 “위임하였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해당부분만열람하게”를 “해당 부분만 열람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이상”을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되는자 및 기타”를 “인정되는 사람 및 그 밖의”로,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규정의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1회에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

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7시까지”를 “7시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인터넷에의”를 “인터넷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3.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3.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4.“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를 “주소란에는 도로 명과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로 하되, 단서규정은 그대로 둔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작성요령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조항 수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5호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보건의료업무 담당부서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각 동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

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 동)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소관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및 간사)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 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③ 대표협의체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해당업무 실무자로 한다.

④ 협의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근 유급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상근 유급직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15.7.1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전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6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이라 함은”을 ““공동주택”이란”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제6의4호 다음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의5.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지원근거가 미흡한 입주민 다수 공동이용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7호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특수용 종량제봉투"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제5호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기 위해 PP마대로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7.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폐기물의 처리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적정한 인원,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 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기준은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3장 폐기물관리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 또는 장비,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따른 여객터미널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제14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고, 배출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소량배출 건설폐기물(깨진 유리, 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은 특수용 종량제봉투(PP마대를 말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를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4장 신고포상금

제17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 1회 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8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 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 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부당하

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지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당시 속초시에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종량제봉투

제2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 : 생활폐기물에 사용
2. 공공용 종량제봉투 :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
3. 특수용 종량제봉투 : 가정에서의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에 사용
4.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사용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종량제봉투 : 흰색
2. 재사용종량제봉투 : 옅은 녹색
3. 공공용 종량제봉투 : 청색
4. 특수용 종량제봉투 : 황색(p.p마대)
5.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 황색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바코드 등 위조방지 기술 도입,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되는 공급위탁수수료를 민간대행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제10조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부여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청소에 필요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골목길·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장소의 단체 청소활동에 대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아닌 각종 사회단체의 정화활동사항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량을 판단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지정표지판 및 규정가격표 부착
3.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5.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이행의무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스티커)을 회수하여야 하고,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 제6조, 제13조, 제21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1	가 방	대형(높이 60cm 이상)	3,000	
		중형(높이 60cm 미만)	2,000	
		소형(높이 30cm 미만)	1,000	
2	가스레인지	모든 규격	3,000	
3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3,000	
4	가습기	모든 규격	2,000	
5	거 울	1㎡ 이상	3,000	
		1㎡ 미만	2,000	
6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7	교자상	4인 이상	4,000	
		4인 미만	3,000	
		3인 미만	2,000	
8	기타폐기물	0.5㎡ 미만	3,000	
		0.5㎡ ~ 1㎡	5,000	
		1㎡ 초과 0.5㎡ 마다	3,000	
9	깨진유리/항아리	5kg 미만	2,000	
		초과 1kg당	1,000	
10	난 로	30평형 이상	4,000	
		30평형 미만	3,000	
		20평형 미만	2,000	
11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12	다리미판	모든 규격	1,000	
13	대자리	모든 규격	2,000	
14	돌침대	더 블	50,000	
		싱 글	30,000	
15	런닝머신	모든 규격	20,000	
16	매트리스	더블/퀸	9,000	
		싱 글	7,000	
17	목 재	5kg미만	2,000	
		초과 1kg 당	1,000	
18	문 갑	높이 1m 이상	5,000	
		높이 1m 미만	3,000	
19	문 짝	목 재	3,000	
		폐화유리	15,000	
		강화유리	30,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20	문서세단기	모든 규격	5,000	
21	믹서기/분쇄기	모든 규격	3,000	
22	벽시계	대 형(높이 1m 이상)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2,000	
23	변기통	양변기	11,000	
		좌변기	5,000	
		소변기	9,000	
24	병 풍	대형(높이 1.5m 이상, 1폭당)	2,000	
		소형(높이 1.5m 미만, 1폭당)	1,000	
25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26	비디오	모든 규격	2,000	
27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28	서랍장	5단 이상	7,000	
		4단 미만	5,000	
		3단 미만	4,000	
29	선풍기	초대형(높이 1.5m 이상)	5,000	
		대 형(높이 1.5m 미만)	4,000	
		중 형(높이 1m 미만)	3,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2,000	
30	세면대	대리석	10,000	
		도자기	5,000	
		FRP	4,000	
31	쇼 파	4인용 이상(특대)	12,000	
		3인용	8,000	
		2인용	6,000	
		1인용	4,000	
32	수족관	2㎡ 이상	30,000	
		1㎡ 이상	13,000	
		1㎡ 미만	8,000	
		50cm㎡ 미만	3,000	
33	스캐너	모든 규격	3,000	
34	스탠드	모든 규격	3,000	
35	스피커	대 형(높이 50cm 이상)	3,000	
		중 형(높이 50cm 미만)	2,000	
		소 형(높이 30cm 이하)	1,000	
36	식 탁	6인용 이상(목재)	6,000	
		6인용 미만(목재)	4,000	
		6인용 이상(대리석)	20,000	
		6인용 미만(대리석)	15,000	
37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38	식기세척기	가정용	4,000	
		업소용	10,000	
39	신발장	길이 1.5m 이상(특대)	8,000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3,000	
40	싱크대	길이 1.2m 이상(1쪽당)	10,000	
		길이 90cm 이상(1쪽당)	7,000	
		길이 90cm 미만(1쪽당)	5,000	
41	액 자	길이 1m 이상	3,000	
		길이 1m 미만	2,000	
		길이 50cm 미만	1,000	
42	오디오 장식장	폭 1m 이상	4,000	
		폭 1m 미만	3,000	
43	오락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0,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44	옥매트	더블(2인용)	13,000	
		싱글(1인용)	8,000	
45	울 겐	모든 규격	8,000	
46	옷걸이	모든 규격	3,000	
47	욕 조	대리석	15,000	
		FRP	5,000	
48	이 불	겨울용(장당)	2,000	
		여름용(장당)	1,000	
49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3,000	
50	자전거	일반용	4,000	
		어린이용	3,000	
51	의 자	대형(3인용 이상)	4,000	
		중형(3인용 미만)	3,000	
		소형(1인용)	2,000	
52	유모차	대형	4,000	
		2인용	3,000	
		1인용	2,000	
53	장 롱	폭 1.2m 이상 1쪽	14,000	
		폭 1.2m 미만 1쪽	10,000	
		폭 60cm 미만 1쪽	6,000	
54	장식장	90cm*150cm 이상	8,000	
		90cm*150cm 미만	7,000	
55	장난감 및 인형류	3kg 미만	1,000	
		초과 1kg 당	1,000	
56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57	전기/압력솔	모든 규격	3,000	
58	전기매트	모든 규격	3,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59	전자울겐	대 형(길이 1.5m 이상)	10,000	
		중 형(길이 1.5m 미만)	8,000	
		소 형(길이 1m 미만)	5,000	
60	전화기	모든 규격	1,000	
61	정수기	스탠드형	5,000	
		탁상형	3,000	
62	책꽂이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3,000	
63	책 장	90cm*150cm 이상	6,000	
		90cm*150cm 미만	5,000	
64	책 상	양수, 대형	7,000	
		편수, 소형	6,000	
65	청소기	업소용	5,000	
		가정용	3,000	
66	침대 받침대	더블/퀸	10,000	
		싱 글	6,000	
67	카펫트	가정용(면적 1㎡ 미만)	3,000	
		가정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업소용(면적 1㎡ 미만)	4,000	
		업소용(면적 1㎡ 초과 0.5㎡ 마다)	1,000	
68	캐비닛	대형(높이 1.5m 이상)	11,000	
		중형(높이 1.5m 미만)	10,000	
		소형(높이 1m 미만)	8,000	
69	캔음료 자판기	모든 규격	25,000	
70	컴퓨터	본 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잉크젯)	3,000	
		스피커	1,000	
		키보드	1,000	
71	탁구대	모든 규격	15,000	
72	탁자(테이블)	90cm*180cm 이상	10,000	
		90cm*180cm 미만	5,000	
73	텔레비전 받침대	가로 1.5m 이상	4,000	
		가로 1.5m 미만	3,000	
		가로 1m 미만	2,000	
74	팩스기기	모든 규격	3,000	
75	플라스틱류	5kg 미만	3,000	
		초과1kg 당	1,000	
76	피아노	그랜드	23,000	
		어프라이트	14,000	

연번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단위:원)	비 고
77	화일캐비닛	4단 이상	5,000	
		3단 이하	3,000	
78	화장대	길이 1m 이상(거울별도)	5,000	
		길이 1m 미만(거울별도)	3,000	
79	환풍기	모든 규격	2,000	
80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81	냉장고	500ℓ 이상	20,000	
		500ℓ 미만	11,000	
		300ℓ 미만	10,000	
		200ℓ 미만	7,000	
		100ℓ 미만	5,000	
82	복사기	대 형(복합기)	12,000	
		중 형	8,000	
83	에어컨 (실외기,유류통 포함)	264m ² 형 이상	15,000	
		66m ² 형 이상	10,000	
		66m ² 형 미만	8,000	
84	온풍기	264m ² 형 이상	8,000	
		66m ² 형 이상	5,000	
		66m ² 형 미만	4,000	
85	오디오	대 형(높이 1m 이상)	5,000	
		중 형(높이 1m 미만)	4,000	
		소 형(높이 50cm 미만)	3,000	
86	자동판매기	대 형(높이 1.5m 이상)	12,000	
		중 형(높이 1.5m 미만)	8,000	
		소 형(높이 1m 미만)	5,000	
87	텔레비전	50인치 이상	12,000	
		50인치 미만	10,000	
		40인치 미만	8,000	
		30인치 미만	5,000	
		20인치 미만	3,000	
88	세탁기	10kg 이상(드럼)	8,000	
		10kg 미만	5,000	
		5kg 미만	4,000	

비고) 대형폐기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폐기물의 경우 중량, 크기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함

[별표 2]

반입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적용대상 폐기물	단위	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	38,500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톤	84,500
음식물류 폐기물	톤	86,650

[별표 3]

규 격 봉 투 가 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ℓ)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판매가격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1	45	50
	3	72	80
	5	90	100
	10	180	200
	20	360	400
	30	490	550
	50	860	950
	75	1,260	1,400
	100	1,710	1,900
P.P포대	100	2,520	2,800

비고 1. 음식물폐기물용, 재사용봉투의 용량별 봉투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가격과 동일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4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료수·식용유) ◦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 등(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3. 병류	◦ 음료수병, 그 밖의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 제거할 것 ·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봉투 등에 넣어서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 페트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봉투 등에 넣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표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재질(PE, PP 등)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	건당 500,000원
2.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15,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건당 25,000원
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건당 25,000원
마.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50,000원
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건당 100,000원
사.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건당 20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3.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집단급식소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 (2) 영업장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목욕장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경우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그 밖의 교육기관, 영화관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1)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당 50,000원 건당 30,000원 건당 20,000원 건당 10,000원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건당 50,000원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448호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하되 그 중 제2호는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밀폐식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휴게·일반음식점 및 관광숙박업 영업을 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의 경우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 제거 후 시장이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전용용기에 배출

2.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종량제 시행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한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만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배출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4서식)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고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의5, 6서식) 교부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을 이행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4호의3, 4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법이나 폐기물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계획 이행여부, 자가처리 시 재활용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 등 신고사항 확인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

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발굴 및 추진 위원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속초시 소속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발굴 및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시책 발굴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대한 시책 추진
3.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1명
2. 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 환경 업무분야 5급 공무원 2명 이내
3. 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허위사실 등으로 위촉된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 담당이 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8조, 제15조, 제16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1. 식품 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물찌꺼기	1.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탈수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장비)에 배출 2. 비닐류, 병뚜껑, 패각류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안되는 쓰레기
육 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채소류	무, 배추의 흙이 묻은 뿌리 부위
	옥수수 송이·껍질·수염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옥수수차 등)의 티백
기 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개정이유

경기활동 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일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구분 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함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43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관련)

구분	직급	직 류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합 계	합 계		570	364	11	39	84	72
	정 무 직		1	1	-	-	-	-
	일 반 직		552	361	11	28	81	71
	별 정 직		1	1	-	-	-	-
	지 도 직		6	-	-	6	-	-
	일반직 또는 지도직		6	-	-	5	-	1
	학예연구사		4	1	-	-	3	-
정무	정 무 직		1	1	-	-	-	-
별 정 직	소 계		1	1	-	-	-	-
	6급	소 계	1	1	-	-	-	-
	상당	비 서 실 장	1	1	-	-	-	-
지 도 직	소 계		6	-	-	6	-	-
	5급	농 촌 지 도 관	-	-	-	-	-	-
	6급 상당	농 촌 지 도 사	6	-	-	6	-	-
4 급	소 계		1	1	-	-	-	-
	국 가 서 기 관		-	-	-	-	-	-
	지 방 서 기 관		1	1	-	-	-	-
4급 또 는 5급	소 계		3	2	-	1	-	-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1	-	-	1	-	-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1	1	-	-	-	-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1				
5 급	소 계		32	16	2	-	6	8
	지방행정사무관		10	8	2	-	-	-
	지방녹지사무관		-	-	-	-	-	-
	지방시설사무관		2	2	-	-	-	-
	지방의무사무관		-	-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2	2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1	1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1	-	-	-	1
	행정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시설사무관		5	-	-	-	-	5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	-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2	-	-	-	2	-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해양수산물사무관, 시설사무관		1	-	-	-	-	1
	지방행정·지방시설·지방녹지사무관		-	-	-	-	-	-
	지방행정·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학예연구관		1	-	-	-	1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학예연구관		1				1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1	1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물사무관		1				1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1	1				

6 급	소 계	119	84	2	6	17	10
	지 방 행 정 주 사	36	27	2	-	6	1
	지 방 녹 지 주 사	1	1	-	-	-	-
	지 방 보 건 주 사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 방 시 설 주 사	8	6	-	-	2	-
	지방사회복지주사	1	1	-	-	-	-
	지 방 전 산 주 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지 방 세 무 주 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1	-	-	-	-	1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8	6	-	-	-	2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3	2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보건주사	2	1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전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17	16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녹지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8	4	-	-	-	4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시설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지방보건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시설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환경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3	-	-	3	-	-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2	-	-	-	-	2
	환경연구사, 환경주사, 행정주사, 보건 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시설주사	1	1	-	-	-	-
	지방통신운영주사	1	1	-	-	-	-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	-	-	-
	지방운전주사	1	1	-	-	-	-
	지방화공운영주사	1	-	-	-	1	-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	1	1	-	-	-	-

6 급	소 계	119	84	2	6	17	10
	지 방 행 정 주 사	36	27	2	-	6	1
	지 방 녹 지 주 사	1	1	-	-	-	-
	지 방 보 건 주 사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지 방 시 설 주 사	8	6	-	-	2	-
	지방사회복지주사	1	1	-	-	-	-
	지 방 전 산 주 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지 방 세 무 주 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1	-	-	-	-	1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8	6	-	-	-	2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3	2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3	3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보건주사	2	1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전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17	16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녹지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8	4	-	-	-	4
	지방환경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시설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1	1	-	-	-	-
	지방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 지방보건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시설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환경주사	-	-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공업주사	1	1	-	-	-	-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3	-	-	3	-	-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간호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환경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2	-	-	-	-	2
	환경연구사, 환경주사, 행정주사, 보건 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	1	-	-	-	1	-
	지방행정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시설주사	1	1	-	-	-	-
	지방통신운영주사	1	1	-	-	-	-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	-	-	-
	지방운전주사	1	1	-	-	-	-
	지방화공운영주사	1	-	-	-	1	-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	1	1	-	-	-	-

	소 계	185	128	3	9	26	19
7 급	지 방 행 정 주 사 보	64	40	2	1	6	15
	지 방 농 업 주 사 보	1	-	-	1	-	-
	지 방 녹 지 주 사 보	1	1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3	3	-	-	-	-
	지 방 시 설 주 사 보	11	10	-	-	1	-
	지 방 방 송 통 신 주 사 보	2	2	-	-	-	-
	지방통신주사보, 지방행정주사보, 기록연구사	1	1	-	-	-	-
	지 방 보 건 주 사 보	1	-	-	1	-	-
	지 방 세 무 주 사 보	6	6	-	-	-	-
	지 방 공 업 주 사 보	5	2	-	-	3	-
	지 방 간 호 주 사 보	3	-	-	3	-	-
	지 방 환 경 주 사 보	2	2	-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	-	2	-	-
	지 방 전 산 주 사 보	2	2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9	5	-	-	-	4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4	14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8	8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녹지주사보	2	2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	-	-	-	-	-
	지방농업주사보, 지방수의주사보	1	-	-	1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	-	-	1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1	-	-	-	1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	-	-	-	1	-
	지방환경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2	2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1	1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	4	-	-	-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2	2	-	-	-	-
	환경연구사, 보건주사보, 공업주사보	1	-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사서주사보	1	-	-	-	1	-
	지방행정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	-	-	-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지방녹지주사보,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지방통신운영주사보	3	2	1	-	-	-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1	1	-	-	-	-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1	-	-	1	-
	지방기계운영주사보	3	1	-	-	2	-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	-	-	-
	지방운전주사보	5	4	-	-	1	-
	지방화공운영주사보	1	1	-	-	-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지방시설관리주사보	8	4	-	-	4	-

구	구	소 계					
		146	104	1	7	20	14
8	지 방 행 정 서 기	44	34	1	-	2	7
	지 방 녹 지 서 기	-	-	-	-	-	-
	지 방 농 업 서 기	2	-	-	2	-	-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	-	-	-
	지 방 시 설 서 기	6	6	-	-	-	-
	지 방 공 업 서 기	6	3	-	-	3	-
	지 방 환 경 서 기	1	1	-	-	-	-
	지 방 보 건 서 기	2	-	-	2	-	-
	지 방 통 신 서 기	-	-	-	-	-	-
	지 방 간 호 서 기	1	-	-	1	-	-
	지 방 세 무 서 기	8	8	-	-	-	-
	지 방 의 료 기 술 서 기	1	-	-	1	-	-
	지 방 전 산 서 기	3	3	-	-	-	-
	지 방 사 회 복 지 서 기	11	4	-	-	-	7
	지방행정서기, 지방녹지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8	7	-	-	1	-
	지방행정서기, 지방전산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세무서기	5	5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녹지서기	1	1	-	-	-	-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간호서기	2	1	-	1	-	-
	지방행정서기, 지방보건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환경서기, 지방공업서기	1	-	-	-	1	-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시설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1	1	-	-	-	-
	지방시설서기, 지방공업서기	3	3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	4	4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보건서기	1	1	-	-	-	-
	지방행정서기, 지방해양수산, 지방시설서기	3	3	-	-	-	-
	지방행정서기, 방재안전, 지방시설서기	1	1	-	-	-	-
	지방환경서기, 지방공업서기	2	-	-	-	2	-
	지방공업서기, 지방위생서기	1	-	-	-	1	-
	지방행정서기, 지방사서서기	2	-	-	-	2	-
	지방통신운영서기	1	1	-	-	-	-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1	1	-	-	-	-
	지방전기운영서기	4	1	-	-	3	-
	지방기계운영서기	1	1	-	-	-	-
	지방열관리운영서기	-	-	-	-	-	-
	지방운전서기	7	5	-	-	2	-
	지방위생서기	2	-	-	-	2	-
	지방사무운영서기, 지방시설관리서기	3	2	-	-	1	-
	방재안전, 지방사무운영서기, 지방시설관리서기	1	1	-	-	-	-

9급	소 계		65	25	3	5	12	20
	지방행정서기보		3	2	-	-	-	1
	지방시설서기보		-	-	-	-	-	-
	지방세무서기보		-	-	-	-	-	-
	지방전산서기보		-	-	-	-	-	-
	지방녹지서기보		1	1	-	-	-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9	8	-	-	-	11
	지방공업서기보		2	-	-	1	1	-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	1	-	-	-	-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시설서기보, 지방공업서기보		1	1	-	-	-	-
	지방기계운영서기보		4	-	-	-	4	-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1	-	1	-	-	-
	지방운전서기보		6	1	2	3	-	-
	지방사무운영서기보, 지방시설관리서기보		26	10	-	1	7	8
	지방전기운영서기보, 지방열관리서기보		1	1	-	-	-	-
전문경력관	소 계		1	1	-	-	-	-
	나군	체육지도사	1	1	-	-	-	-
일반 또는 지도	소 계		6	-	-	5	-	1
	농촌지도관, 지방농업사무관		1	-	-	1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4	-	-	4	-	-
	농촌지도사, 지방농업주사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1	-	-	-	-	1
학예연구사	계		4	1	-	-	3	-
	6급 상당		2	1	-	-	1	-
	7급 상당		2	-	-	-	2	-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을 위하여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속초시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 초 시 장

2015. 12. .

속초시 훈령 제 호

속초시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본청 실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6	-	-	-		-	-	-	-	-	2	-	-	-	2	2	-		-
지방사회복지주사	1	-	1	-		-	-	-	-	-	-	-	-	-	-	-	-		-
지 방 전 산 주 사	1	-		1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1	-	-	-		-	-	-	-	-	-	-	1	-	-	-	-		-
지 방 세 무 주 사	3	-	-	-		-	3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	-	-	-		-	-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6	-	4	-		-	-	-	2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보건주사	2	-	-	-		-	-	-	-	-	-	-	-	2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3	-	-	-		-	-	-	-	2	-	1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1	-	-	-		-	-	-	-	-	-	-	-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지방보건주사	1	-	-	-		-	-	-	-	-	-	-	-	1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전산주사	1	-	-	1		-	-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16	-	-	-	1	1	-	2	-	-	1	2	1	-	2	2			1

[illegible]

																	-		
지방공업주사, 지방환경연구소, 지방환경주사	-	-	-	-		-	-	-	-	-	-	-	-	-	-	-	-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	-	-	-		-	-	-	-	-	-	-	-	-	-	-	-		-
지방환경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	-	-	-		-	-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	-	-	-		-		-	-	-		-	-	-	-	-	-		-
환경연구소, 환경주사, 행정주사, 보건주사	-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	-																		
지방행정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시설주사	1																	1	
지방통신운영주사	1	-	-	1		-		-	-	-		-	-	-	-	-	-		-
지방전기운영주사	1	-	-	-	1			-	-	-		-	-	-	-	-	-		-
지방운전주사	1	-	-	-				1	-	-		-	-	-	-	-	-		-
지방화공운영주사	-	-	-	-				-	-	-		-	-	-	-	-	-		-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	1	-	-	-		1		-	-	-		-	-	-	-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1	-	-	1		-	-	-	-	-	-	-	-	-	-	-			-
		1	-	-	-		-	-	-	-	1	-	-	-	-	-	-			-
		1	1	-	-		-	-	-	-	-	-	-	-	-	-	-			-
		1	-	-	-	1	-	-	-	-	-	-	-	-	-	-	-			-
		4	-	-	1		-	-	1	-	-	-	-	-	-	2	-			-
		1	-	-	-		-	-	-	-	-	-	-	-	1	-	-			-
		4	-	-	-		1	-	1	1	-	1	-	-	-	-	-	-	-	-
8급	소 계	104	4	5	11	5	4	12	9	2	6	7	8	6	4	6	5	4	3	3
		34	3	-	6	2	2	-	3	-	4	4	3	1	1	2	-	-	-	3
	지 방 녹 지 서 기	-	-	-	-		-	-	-	-	-	-	-	-	-	-	-	-	-	-
	지 방 농 업 서 기	-	-	-	-		-	-	-	-	-	-	-	-	-	-	-	-	-	-
	지방해양수산서기	1	-	-	-		-	-	-	-	-	-	-	1	-	-	-	-	-	-
	지 방 시 설 서 기	6	-	-	-		-	-	1	-	-	3	-	-	-	1	1	-	-	-
	지 방 공 업 서 기	3	-	-	-		-	-	1	-	1	-	1	-	-	-	-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⑧	만천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 대	52,912	감)190	52,722	1990.6.25 (건고 제 828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표 시번호	위 치	면 적(m ²)	결정(변경)사유
변경	⑧	속초시 교동 908번 지 일대	52,722	◦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계	52,912	감)190	52,722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0,474	감)202.6	30,271.4	57.4	
	제2종일반주거지역	3,484	증)12.6	3,496.6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54	-	18,954	36.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⑧	속초시 교동 908번지 일 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30,271.4	200% 이하	◦ 편입토지 구적 오차 정정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496.6	250% 이하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 조서

▶ 기정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 계	10	1,497	10,520	-	-	-	4	769	6,152	6	728	4,368
대 로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10	1,497	10,520	-	-	-	4	769	6,152	6	728	4,368

▶ 변경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 계	10	1,497	10,927.9	-	-	-	4	769	6,851.56	6	728	4,076.4
대 로	-	-	-	-	-	-	-	-	-	-	-	-
중 로	-	-	-	-	-	-	-	-	-	-	-	-
소 로	10	1,497	10,927.9	-	-	-	4	769	6,851.56	6	728	4,076.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태	주요 경 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0	8	국지 도로	270	소2-66 교동917도	소2-64 교동917도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 호)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347 (109)	소2-63 교 동 770-1 도	소2-141 교동916도	일반 도로		1977.4.19 (강고 제77-72 호)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420 (159)	대3-3 교 동 835-7 도	소2-141 교동920도	일반 도로		1976.3.27 (건고 제37호)	
기정	소로	2	141	8	국지 도로	231	소2-70 교동922도	소2-64 교동916도	일반 도로		1987.2.17 (강고 제87-12 호)	
기정	소로	3	100	6	국지 도로	324 (197)	중1-4 교 동 770-1 도	7호공공공지 교동915도	일반 도로		1978.3.27	
기정	소로	3	173	6	국지 도로	75	소2-60 교 동 904-5 대	소3-100 교 동 904-7 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 호)	
기정	소로	3	218	6	국지 도로	92	소2-70 교동920도	교동920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 호)	
기정	소로	3	219	6	국지 도로	191	소2-60 교동919도	소3-218 교동921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 호)	
기정	소로	3	220	6	국지 도로	111	소2-60 교동918도	소2-141 교동918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 호)	
기정	소로	3	221	6	국지 도로	62	소2-60 교동918도	소2-141 교동918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 호)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⑤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교 동 907-6공	1,518	-	1,518	1990.12.31 (강고 제90-169 호)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⑦	공공공지	교동904대	870	-	870	2006.6.16 (강고 제 2006-110호)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지 번호	면적(m ²)	획 지		최대획지 규모(m ²)	비 고
				위 치	편입면적(m ²)		
획지 번호와 동일	A (2,839.2)	A-1	187.0	906대	187.0	1,000	
		A-2	176.9	906-1대	176.9	1,000	
		A-3	240.1	906-2대	240.1	1,000	
		A-4	253.9	906-3대	253.9	1,000	
		A-5	215.8	906-4대	215.8	1,000	
		A-6	325.6	906-5대	169.7	1,000	공동건축규제
				906-6대	155.9		
		A-7	236.1	906-8대	236.1	1,000	
		A-8	244.5	906-9대	244.5	1,000	
		A-9	172.5	906-10대	172.5	1,000	
		A-10	206.7	906-11대	206.7	1,000	
		A-11	192.1	906-12대	192.1	1,000	
		A-12	200.5	906-13대	200.5	1,000	
		A-13	187.5	906-14대	187.5	1,000	
	B (1,925.9)	B-1	229.2	907대	229.2	1,000	
		B-2	230.7	907-1대	230.7	1,000	
		B-3	169.3	907-2대	169.3	1,000	
		B-4	168.9	907-3대	168.9	1,000	
		B-5	173.2	907-4대	173.2	1,000	
		B-6	222.8	907-5대	222.8	1,000	
		B-7	221.2	907-7대	221.2	1,000	
		B-8	172.7	907-8대	172.7	1,000	
		B-9	168.9	907-9대	168.9	1,000	
		B-10	169.0	907-10대	169.0	1,000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지 번호	면 적 (㎡)	획 지		최대획지 규모(㎡)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획지 번호와 동일	C (4,067.5)	C-1	200.3	908대	200.3	1,000	
		C-2	196.1	908-1대	196.1	1,000	
		C-3	201.0	908-2대	201.0	1,000	
		C-4	200.6	908-3대	200.6	1,000	
		C-5	201.7	908-4대	201.7	1,000	
		C-6	201.2	908-5대	201.2	1,000	
		C-7	202.1	908-6대	202.1	1,000	
		C-8	202.1	908-7대	202.1	1,000	
		C-9	203.1	908-8대	203.1	1,000	
		C-10	230.0	908-9대	230.0	1,000	
		C-11	243.5	908-14대	243.5	1,000	
		C-12	175.3	908-15대	175.3	1,000	
		C-13	200.0	908-16대	200.0	1,000	
		C-14	201.5	908-17대	201.5	1,000	
		C-15	202.0	908-18대	202.0	1,000	
		C-16	201.5	908-19대	201.5	1,000	
		C-17	201.2	908-20대	201.2	1,000	
		C-18	201.7	908-21대	201.7	1,000	
		C-19	201.0	908-22대	201.0	1,000	
		C-20	201.6	908-23대	201.6	1,000	
	D (3,722.8)	D-1	210.9	909대	210.9	1,000	
		D-2	199.0	909-1대	199.0	1,000	
		D-3	192.7	909-2대	192.7	1,000	
		D-4	192.8	909-3대	192.8	1,000	
		D-5	192.8	909-4대	192.8	1,000	
		D-6	192.8	909-5대	192.8	1,000	
		D-7	192.8	909-6대	192.8	1,000	
		D-8	192.6	909-7대	192.6	1,000	
		D-9	192.6	909-8대	192.6	1,000	
		D-10	239.9	909-9대	239.9	1,000	
		D-11	217.7	909-10대	217.7	1,000	
		D-12	217.2	909-11대	217.2	1,000	
		D-13	202.9	909-12대	202.9	1,000	
		D-14	217.2	909-13대	217.2	1,000	
		D-15	434.4	909-14대	434.4	1,000	
		D-16	217.3	909-16대	217.3	1,000	
		D-17	217.2	909-17대	217.2	1,000	
	E (3,043.3)	E-1	296.8	910대	296.8	1,000	
		E-2	305.4	910-1대	305.4	1,000	
		E-3	483.0	910-2대	483.0	1,000	
		E-4	227.4	910-4대	227.4	1,000	
		E-5	229.9	910-5대	229.9	1,000	
		E-6	215.1	910-7대	215.1	1,000	
		E-7	264.1	910-8대	264.1	1,000	
		E-8	261.1	910-9대	261.1	1,000	
		E-9	265.9	910-10대	265.9	1,000	
		E-10	293.3	910-11대	293.3	1,000	
		E-11	201.3	910-12대	201.3	1,000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면 적 (㎡)	획 지		최대획지 규모(㎡)	비 고
				위 치	편입면적(㎡)		
획지 번호와 동일	F (2,609.1)	F-1	389.7	911대	199.5	1,000	공동건축규제
				911-12대	190.2	1,000	
		F-2	219.6	911-1대	219.6	1,000	
		F-3	165.9	911-2대	165.9	1,000	
		F-4	196.1	911-3대	196.1	1,000	
		F-5	196.5	911-4대	196.5	1,000	
		F-6	195.5	911-5대	195.5	1,000	
		F-7	196.5	911-6대	196.5	1,000	
		F-8	224.9	911-7대	224.9	1,000	
		F-9	250.4	911-8대	250.4	1,000	
		F-10	191.7	911-9대	191.7	1,000	
		F-11	191.9	911-10대	191.9	1,000	
		F-12	190.4	911-11대	190.4	1,000	
	G (2,569.4)	G-1	170.6	912대	170.6	1,000	
		G-2	208.0	912-1대	208.0	1,000	
		G-3	204.3	912-2대	204.3	1,000	
		G-4	213.3	912-3대	213.3	1,000	
		G-5	238.8	912-4대	238.8	1,000	
		G-6	188.2	912-5대	188.2	1,000	
		G-7	220.9	912-6대	220.9	1,000	
		G-8	200.5	912-7대	200.5	1,000	
		G-9	216.0	912-8대	216.0	1,000	
		G-10	181.8	912-9대	181.8	1,000	
		G-11	181.9	912-10대	181.9	1,000	
		G-12	174.0	912-11대	174.0	1,000	
		G-13	171.1	912-12대	171.1	1,000	
	H (1,174.3)	H-1	582.0	908-10대	294.1	1,000	공동건축규제
				908-11대	287.9	1,000	
		H-2	295.9	908-12대	295.9	1,000	
		H-3	296.4	908-13대	296.4	1,000	
	I (8,587.1)	I-1	2,229.9	904-2대	2,229.9	10,000	
		I-2	267.8	904-9대	267.8	10,000	
		I-3	230.0	904-10대	230.0	10,000	
		I-4	5,788.4	904-5대	5,788.4	10,000	
		I-5	61.0	772-21대	61.0	10,000	
		I-6	10.0	656-1대	10.0	10,000	
	J (8,359.0)	J-1	2,639.9	904-1대	2,639.9	10,000	J-2와 공동건축 권 장
		J-2	448.2	904-8대	448.2	10,000	J-1과 공동건축 권 장
		J-3	5,270.9	904-6대	5,270.9	10,000	
	K (600.0)	K-1	600.0	904-4중	600.0	1,000	
	공1	공1	1,518.4	907-6공	1,518.4	-	어린이공원
	공2	공2	949.8	904대	870.2	-	공공공지

■ 변 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가구·획지 번호와 동 일	A-1BL	2,839.2	1	교동 906대	187.0	
			2	교동 906-1대	176.9	
			3	교동 906-2대	240.1	
			4	교동 906-3대	253.9	
			5	교동 906-4대	215.8	
			6	교동 906-5대	169.7	
			7	교동 906-6대	155.9	
			8	교동 906-8대	236.1	
			9	교동 906-9대	244.5	
			10	교동 906-10대	172.5	
			11	교동 906-11대	206.7	
			12	교동 906-12대	192.1	
			13	교동 906-13대	200.5	
			14	교동 906-14대	187.5	
	A-2BL	1,925.9	1	교동 907대	229.2	
			2	교동 907-1대	230.7	
			3	교동 907-2대	169.3	
			4	교동 907-3대	168.9	
			5	교동 907-4대	173.2	
			6	교동 907-5대	222.8	
			7	교동 907-7대	221.2	
			8	교동 907-8대	172.7	
			9	교동 907-9대	168.9	
			10	교동 907-10대	169.0	
	A-3BL	4,067.5	1	교동 908대	200.3	
			2	교동 908-1대	196.1	
			3	교동 908-2대	201.0	
			4	교동 908-3대	200.6	
			5	교동 908-4대	201.7	
			6	교동 908-5대	201.2	
			7	교동 908-6대	202.1	
			8	교동 908-7대	202.1	
			9	교동 908-8대	203.1	
			10	교동 908-9대	230.0	
			11	교동 908-14대	243.5	
			12	교동 908-15대	175.3	
			13	교동 908-16대	200.0	
			14	교동 908-17대	201.5	
			15	교동 908-18대	202.0	
			16	교동 908-19대	201.5	
			17	교동 908-20대	201.2	
			18	교동 908-21대	201.7	
			19	교동 908-22대	201.0	
			20	교동 908-23대	201.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²)	
가구·획지 번호와 동 일	A-4BL	3,722.8	1	교동 909대	210.9	
			2	교동 909-1대	199.0	
			3	교동 909-2대	192.7	
			4	교동 909-3대	192.8	
			5	교동 909-4대	192.8	
			6	교동 909-5대	192.8	
			7	교동 909-6대	192.8	
			8	교동 909-7대	192.6	
			9	교동 909-8대	192.6	
			10	교동 909-9대	239.9	
			11	교동 909-10대	217.7	
			12	교동 909-11대	217.2	
			13	교동 909-12대	202.9	
			14	교동 909-13대	217.2	
			15	교동 909-14대	434.4	
			16	교동 909-16대	217.3	
			17	교동 909-17대	217.2	
	A-5BL	3,043.3	1	교동 910대	296.8	
			2	교동 910-1대	305.4	
			3	교동 910-2대	483.0	
			4	교동 910-4대	227.4	
			5	교동 910-5대	229.9	
			6	교동 910-7대	215.1	
			7	교동 910-8대	264.1	
			8	교동 910-9대	261.1	
			9	910-10대	265.9	
			10	910-11대	293.3	
			11	910-12대	201.3	
	A-6BL	2,609.1	1	교동 911대, 911-12대	389.7	
			2	교동 911-1대	219.6	
			3	교동 911-2대	165.9	
			4	교동 911-3대	196.1	
			5	교동 911-4대	196.5	
			6	교동 911-5대	195.5	
			7	교동 911-6대	196.5	
			8	교동 911-7대	224.9	
			9	교동 911-8대	250.4	
			10	교동 911-9대	191.7	
			11	교동 911-10대	191.9	
			12	교동 911-11대	190.4	
	A-7BL	2,569.4	1	교동 912대	170.6	
			2	교동 912-1대	208.0	
			3	교동 912-2대	204.3	
			4	교동 912-3대	213.3	
			5	교동 912-4대	238.8	
			6	교동 912-5대	188.2	
			7	교동 912-6대	220.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m ²)	
가구·획지 번호와 동 일	A-7BL	2,569.4	8	교동 912-7대	200.5	
			9	교동 912-8대	216.0	
			10	교동 912-9대	181.8	
			11	교동 912-10대	181.9	
			12	교동 912-11대	174.0	
			13	교동 912-12대	171.1	
	B-1BL	8,325.1	1	교동 904-2대	2,229.9	
			2	교동 904-9대	267.8	
			3	교동 904-10대	230.0	
			4	교동 904-5대	5,526.4	당초오기 정정
			5	교동 772-21대	61.0	
			6	교동 656-1대	10.0	
	B-2BL	8,359.0	1	교동 904-1대	2,639.9	
			2	교동 904-8대	448.2	
			3	교동 904-6대	5,270.9	
	C	1,174.3	1	교동 908-10대, 908-11 대	582.0	
			2	교동 908-12대	295.9	
			3	교동 908-13대	296.4	
	D	600.0	1	교동 904-4종	600.0	

2)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최대개발규모	적용대상	비 고
A	1,000m ²	단독주택용지	
B	10,000m ²	공동주택용지	
C	1,000m ²	근린생활시설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 정

▶ 단독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B,C,D, E,F,G	-	용도	허용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0%이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180% / 허용용적률 200%
		높 이		◦ 4층 이하

▶ 공동주택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I,J	-	용도	허용	◦ 아파트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300%
		높 이		◦ 5~13층 이하(공동주택의 층수는 재건축 도래시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조정토록 함)

▶ 종교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K	-	용도	허용	◦ 종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300%
		높 이		◦ 5~13층 이하

▶ 근린생활시설용지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H	-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기준용적률 180% / 허용용적률 200%
		높 이		◦ 4층 이하

▶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탑상형 건축물	공동주택	◦ 오픈스페이스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탑상형 건축물 권장 ◦ 형태 : 장변/단변이 1/4이상으로 3층부이하는 건폐율 50%이하, 4층부이상은 건폐율 40%이하인 건축물
경사지붕	구역 전체	◦ 지구내 경관개선 및 일체화된 이미지 유도
1층부 형태	구역 전체	◦ 접한 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나 건물의 외벽이 기둥의 중심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정
색채 및 외벽	구역 전체	◦ 속초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권장 - 주거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건축물(외벽) : 연한밤색의 off-white 계열 - 주거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건축물(지붕) : 짙은밤색 계열
담장녹화	아파트부지담장	◦ 가로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내부 일방통행도로변의 가로에 설치 권장 ◦ 속초시 테마수 위주로 식재권장
빗물이용시설	구역 전체	◦ 빗물저장시설 설치 권장

■ 변경

▶ 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A	1~7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연 면적 60% 이하.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B	1~2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300% 이하
		높 이		-
		형 태		-
		배 치		-
		건 축 선		-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C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형 태		◦ 1층부는 접한도로 및 공지와 높이차를 10cm이하로 권장 ◦ 그 이상의 단차가 불가피한 경우 외부계단이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
		배 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가급적 일치
		건 축 선		-

▶ 종교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D	-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륜		◦ 300% 이하
		높 이		-
		형 태		-
		배 치		-
		건 축 선		-